

# 정관개정(안)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정관개정 취지 및 사유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현재 정관은 2004년 일부 개정되어 13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관 문구가 명확하지 않고 오류가 많아 조합원들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송비용 등 관련 법적비용의 증가로 조합비 낭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천시의 정관개정 권고안을 기초로 예전에 운영되었던 정관개정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을 선진조합 건설을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조합원간의 화합과 조합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 <정관개정의 취지 및 방향>

### 1. 문구 오류의 수정

조합 정관 규정의 문구 해석상의 논란 및 내용오류와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편 타당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함.

### 2. 분쟁의 해결

정관내용상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각종 민원 및 소송으로 조합의 화합과 발전을 막는 원인을 해소하고 인천시에서 전국 각 시·도 개인택시조합 정관을 분석하여 제안한 정관개정 권고(안)을 바탕으로 개정하여 정관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정관 규정이 조항별로 상충되거나 겹치는 부분을 법무 법인의 자문 및 검토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있게 해석되도록 개정하기 위함.

### 3. 선진 정관 수립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전체 조합원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관을 만들어 조합원 복리증진 및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택시 사업의 업권 보호와 업권 신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기 위함.

현 행	개 정(안)
<b>제 1 장 , 총 칙</b>	<b>제 1 장 , 총 칙</b>
<b>제 1 조 (목 적)</b>	<b>제 1 조 (목 적)</b>
<p>본 조합은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권익을 수호하고 인천광역시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사회공익 사업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운송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p>	
<b>제 2 조 (명 칭)</b>	<b>제 2 조 (명 칭)</b>
<p>본 조합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이라 칭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p>	
<b>제 3 조 (사업구역)</b>	<b>제 4 조 (사 무 소)</b>
<p>본 조합의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 일원으로 한다.</p>	<p>1. 본 조합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둔다 (개정이유) 조합 사무소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며, 숙원사업인 조합 청사를 이전 할 경우 정관부터 변경하지 않으면 정관위반이 되므로 반드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임.</p> <p>2.</p>
<b>제 4 조 (사 무 소)</b>	<b>제 5 조 (조합의 사업)</b>
<p>1. 본 조합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7-25지에 둔다.</p> <p>2. 본 조합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합 산하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p>	<p>1.</p> <p>2.</p> <p>3.</p> <p>4.</p> <p>5. <b>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5조에 의거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b>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공제조합 관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써 본조 7항과 겹치는 규정이며 조합의 사업은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함.</p> <p>6. <b>교통문화정착운동</b> 및 자율화 업무,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참여. (개정이유)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조합 사업을 명문화 함.</p> <p>7.</p> <p>8.</p>
<b>제 5 조 (조합의 사업)</b>	
<p>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p> <p>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p> <p>2.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진흥 발전과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조사 연구사업.</p> <p>3. 조합원의 교육 훈련.</p> <p>4.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에 관한 사항.</p> <p>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p> <p>6. 새마을 운동 및 자율화 업무, 지역사회발전 및 개발에 참여.</p> <p>7. 조합원의 공제 및 복지사업.</p> <p>8.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을 필요한 사업.</p>	

현 행	개 정(안)
<b>제 2 장 , 조 합 원</b>	<b>제 2 장 , 조 합 원</b>
<b>제 6 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b>	<b>제 6 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b>
<p>1. 조합은 조합원 또는 비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에 따라 공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p> <p>2. 비 조합원이 조합 소유의 유 . 무형재산을 이용할 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조합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b>대의원회</b>의 승인에 따라 공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p> <p>(개정이유) 조합창립이래 현재까지 대의원회 결정으로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인천시의 권고에 따라 정관내용 중 총회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개정함으로써 분쟁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함.</p> <p>2.</p>
<b>제 7 조 (조합원의 자격)</b>	<b>제 7 조 (조합원의 자격)</b>
<p>1.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2. 조합원(재가입 포함)이 되려는 자는 기존 조합원이 부담하여 취득한 조합 재산들을 무상 공동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공유함에 따른 체납된 조합비 및 가입금을 납부해야 한다.</p> <p>3. 사업면허가 양도인가 되거나 취소 또는 폐지된 자는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p> <p>4. 조합원 자격 상실자 및 탈퇴자는 (상실. 탈퇴) 전까지 납부한 조합비 일체를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없다.</p>	<p>1.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b>받고</b> <b>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b></p> <p>(개정이유) 조합원 자격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p> <p>2. 조합원(재가입 포함)이 되려는 자는 기존 조합원이 부담하여 취득한 조합 재산들을 무상 공동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공유함에 따른 체납된 조합비 및 가입<b>비</b>를 납부해야 한다.</p> <p>(개정이유) 명칭을 일원화하고 논란을 없애기 위함.</p> <p>3.</p> <p>4.</p>
<b>제 8 조 (조합원의 권리)</b>	<b>제 8 조 (조합원의 권리)</b>
<p>본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회 소집의 요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li> <li>본 조합 서류 열람 시 제 규정에 의한 복제와 유출은 할 수 있다.</li> <li>본 조합원에 할당된 물자수배.</li> <li>본 조합 공동시설 이용.</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ol>

현 행	개 정(안)
<p><b>제 9 조 (조합원의 의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li> <li>2. 제10조의 경비부과에 대한 이행과 본 조합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li> <li>3. 조합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강제 징수 할 수 있으며,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일체의 제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li> </ol>	<p><b>제 9 조 (조합원의 의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 정관과 <b>조합원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 및 승인 사항</b>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회의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li> <li>2.</li> <li>3.</li> </ol>
<p><b>제 10 조 (경비부과)</b></p> <p>조합원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입비 : 조합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한다.</li> <li>2. 월례비 : 조합원은 균등하게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비를 매월 부과한다.(이사회의 심의)</li> <li>3. 특별부과금 :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및 특별한 경우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부과한다. (이사회의 심의)</li> <li>4. 가입비 및 체육진흥기금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시행 공포일 이후 가입자는 이직위로금만 지급하며, 가입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시행 공포일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구법을 준용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 가입비만 환불한다.</li> </ol>	<p><b>제 10 조 (경비부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 <b>조합비</b> : 조합원은 균등하게 <b>대의원회</b>에서 결의된 조합비를 매월 <b>납부하여야 한다 (일부삭제)</b> (개정이유) 월례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 조합비로 문구 수정하였으며, 총회의 의미는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대의원회로 정립하였고 이사회의 심의는 별도 규정이 없어도 필수사항이라 삭제하였음.</li> <li>3. 특별부과금 :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및 특별한 경우에 <b>대의원회</b>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부과한다. <b>(일부삭제)</b></li> <li>4. 가입비 및 체육진흥기금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b>2003년 1월 1일</b> 시행 공포일 이후 가입자는 이직위로금만지급하며, 가입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b>2003년 1월 1일</b> 시행 공포일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구법을 준용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b>대의원회</b>에서 승인한 가입비만 환불한다. (3,4항 개정이유) 총회의 의미는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대의원회로 정립하였고 이사회의 심의는 별도 규정이 없어도 필수사항이라 삭제하였음. 시행공포일 시점 오류로 인해 혼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시행공포일 시점 정립</li> </ol>

현 행	개 정(안)
<p><b>제 11 조 (조합원의 제재)</b></p> <p>1. 조합은 조합원 중 국가 또는 조합 발전을 저해하거나 본 정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 규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에 대한 제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합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li> <li>② 제8조 권리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부 또는 전부 제한</li> <li>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재 건의</li> </ul> <p>2. 조합의 직책(선출직, 임명직)보유 조합원 중 직분과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p>	<p><b>제 11 조 (조합원의 제재)</b></p> <p>1. 조합은 조합원 중 국가 또는 조합 발전을 저해하거나 본 정관 제9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 규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에 대한 제재는 <b>대의원회</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li> <li>②</li> <li>③</li> </ul> <p>(개정이유)</p> <p>①조합창립이래 현재까지 대의원회 결정으로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총회의 의미는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대의원회로 정립함.</p> <p>②조합원의 중대한 과실로 제재가 필요한 조합원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9000명의 조합원을 한곳에 소집하여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한계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비용(약3,000만원) 문제로 제재가 쉽지 않은 점을 해소 함.</p> <p>③현실적으로 조합원의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여 각종 유언비어 날조하며 회의 진행 방해 (예를 들어 대의원 회의석상에 난입하여 단상을 뛰어다니며 욕설을 하고 물병을 던져 대의원명폐를 깨트리고 조합현관문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폐단을 막아 최소한의 조합 통제권을 회복하고 조합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p> <p>2.</p>
<b>제 3 장 , 임 원 및 선 출 방 법</b>	<b>제 3 장 , 임 원 및 선 출 방 법</b>
<p><b>제 12 조 (임 원)</b></p> <p>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1명.</li> <li>2. 이사 10명</li> <li>3. 감사 2명.</li> <li>4. 전무이사 1명.</li> </ol>	<p><b>제 12 조 (임 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li> <li>3.</li> <li>4.</li> </ol>

현 행	개 정(안)
<p>제 13 조 (임원의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이 아니면 본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전무이사는 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li> <li>2. 본 조합의 임원 중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본 조합에 가입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임원:만5년이상, 이사장:만7년이상) 근속 조합원으로 정한다.</li> <li>3. 선거 공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li> <li>4. 임원이 된 후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li> <li>5.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5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민, 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등을 남용하여 조합 및 조합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확정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는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li> </ol>	<p>제 13 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 본 조합의 임원 중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과 대의원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임원, 대의원:만5년이상, 이사장:만7년 이상) 근속조합원으로 정한다.</li> <li>3. 선거 공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li> <li>4. 임원 및 대의원이 된 후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li> </ol> <p>(2,3,4항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만하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이 혼존하고 있어 자격을 정확하게 정립하여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자</li> <li>②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의 범죄 행위로 5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③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2회이상 제기하였으나 2회이상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최종 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li> <li>④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2회이상 제기하였으나 조합 및 조합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2회이상 확정되어 최종사건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li> </ol> </li> </ol> <p>(개정이유) 그 동안 본 조항은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많은 조항으로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p>

현 행	개 정(안)
<p><b>제 14 조 (선출방법)</b></p> <p>본 조합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은 전체 조합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li> <li>2. 이사 선출은 대의원으로 선출된 36명중에서 지역별 회원 비례에 따라 간선제로 10명 선출한다.</li> <li>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현 이사 및 대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li> <li>4. 전무이사는 임기 만료시나 임기중 결원 발생시 공히, 과거 조합직원 또는 전·현직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li> <li>5.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선출 및 선임된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li> </ol>	<p><b>제 14 조 (선출방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li> <li>3. 감사는 <b>대의원회</b>에서 선출하며, 현 이사 및 대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li> <li>4. 전무이사는 임기 만료시나 임기 중 결원 발생시 공히, 과거 조합직원 또는 전·현직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대의원회</b>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li> </ol> <p>(3,4항 개정이유) ①조합창립이래 현재까지 대의원회 결정으로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총회의 의미는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대의원회로 정립함.</p> <p>②선출 비용 문제 해결 감사 임기 2년에 한 번씩 잣은 선출로 막대한 비용 소모</p> <p>③감사 자격 검증미흡 및 자질 문제 해결 조합 업무내용을 모르는 감사가 선출될 우려가 크며, 대의원회에서 선출시 감사 출마자 자격검증이 용이함.</p> <p>④선출된 감사 사임시 문제 선출한 감사가 이사장 출마 등 개인 사유로 사임시 감사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과 재선출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p> <p>5.</p>
<p><b>제 15 조 (임 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조합의 이사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li> </ol>	<p><b>제 15 조 (임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조합의 이사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li> </ol> <p><b>(① 단서 조항 삭제하고 15조 ⑤항 신설함)</b></p> <p>(개정이유) ①조합의 발전 및 사업의 연속성 현재 우리 조합은 진정으로 조합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낙후된 조합의 현실을 극복하고 정쟁으로 사분오열된 조합을 통합하고 일으켜 세워 선진조합으로 나가가기 위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p>

현 행	개 정(안)
<p>2.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잔여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차기총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단, 감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잔여임기에 관계 없이 보궐 선출한다.</p> <p>3.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p> <p>4.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행하여야 한다.</p>	<p>②복지증진 및 숙원사업(복지타운) 해결 30여년동안 조합이 존속되면서 타시·도 조합과 비교 할 때 조합원들의 권리과 복지를 위해 그 흔한 경정비 사업소 하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조합의 현실임. 조합원의 권리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의 인맥 구축과 지속적인 정치적 활동 및 인천시와 각 구청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함.</p> <p>③조합원들의 선택의 자유 보장 조합원이 직접 판단하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조합 일을 잘하고 능력있고 유능한 인재가 조합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강력한 리더쉽과 유능한 일꾼이 조합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맘껏 조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p> <p>④조합 이사장 임기말 각 기관들의 업무 비협조로 인한 폐단 방지. 조합 이사장의 연임이 안되는 경우 각 기관단체들과의 조합발전 추진사업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이에 따른 전체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선택을 반도록 하기 위함.</p> <p>⑤이사장 업무 의욕 증대 연임이 안되면 임기말 업무 의욕 저하로 조합 운영을 동한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그 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고 지속적 업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함.</p> <p>⑥능력있는 이사장의 연임제한으로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함.</p> <p>2.</p> <p>3.</p> <p>4.</p>

현 행	개 정(안)
	<p><b>5. 모든 임원 및 대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신설)</b></p> <p>(개정이유) 현재 이사, 감사, 대의원이 연임이 가능하듯이 이사장도 연임이 가능하게 하여 형평성있게 개정하기 위함. 타·시도 연임이 가능한 조합의 경우 연임이 안되는 조합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고 연임이 안된 조합은 잣은 고소·고발로 혼돈만 지속.</p> <p>이사장은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함으로써 굳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이사장을 다음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어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하고 능력있는 이사장을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정관으로 개정하고자 함.</p> <p><b>제 16 조 (임원의 임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li> <li>2.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총회의결의에 따라 대리한다. 단 , 지명 할 수 없는 경우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선출하고,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선하여 잔여임기만 행사권을 가지며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경우는 직무 대행자가 시행한다.</li> <li>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제29조에 의한 의결을 한다.</li> <li>4.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사한다. 단, 조합의 감사는 임원 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li> <li>5.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li> <li>6. 임원의 대리권 행사는 일체 불허한다.</li> </ol>

현 행	개 정(안)
<b>제 17 조 (보 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li> <li>2. 이사장 및 전무이사 급여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li> <li>3. 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 업무로 출장할 때는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li> </ol>	<b>제 17 조 (보 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li> <li>3. <b>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 업무로 회의를 하거나 출장을 가는 때에는 소정의 회의비, 출장비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li> </ol> <p>(개정이유) 조합 창립이래 현재까지 대의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정관에 명문화 되지 않은 이유로 각종 소송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문화 함.</p>
<b>제 4 장 , 대 의 원</b>	<b>제 4 장 , 대 의 원</b>
<b>제 18 조 (대의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조합은 총회를 위하여 대의원을 26명이내로 둔다.</li> <li>2.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출하며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li> <li>3. 선거공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li> <li>4. 대의원이 된 후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이상 연체한 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li> </ol>	<b>제 18 조 (대의원회 구성 및 역할)</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본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단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인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예외로 한다.</b></li> </ol> <p>(개정이유) 조합창립이래 현재까지 대의원회 결정으로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총회를 위하여 대의원을 26명 둔다를 문구상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고하여 일부 조합원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쟁의 한 원인이 된 부분으로 이를 해소하고 인천시의 권고안으로 대의원회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 개정하여 분쟁의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b>대의원은 26명 이내로 하되 지역별로 선출하며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b></li> </ol> <p>(개정이유) 조합창립이래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총회의 의미를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회로 규정하고 대의원의 구성을 명확히 함.</p> <p>운수사업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수가 1천명이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률조항을 근거로 대의원회의 구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li> <li>4.</li> </ol>

현 행	개 정(안)
<p><b>제 19 조 (대의원 임기)</b></p> <p>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2. 대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지역별 차 순위 득표자가 자동 승계 된다.</p> <p>3.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b>제 19 조 (대의원 임기)</b></p> <p>1.</p> <p>2.</p> <p>3.</p>
<p><b>제 20 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무)</b></p> <p>1. 본 조합의 대의원은 지역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p> <p>2. 본 조합의 대의원은 정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주요 사항을 의제로 할 수 있다.</p> <p>3. 본 조합의 대의원은 임원의 선출 및 임원 불신임 권고 안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감사의 경우 해임한다.</p>	<p><b>제 20 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무)</b></p> <p>1.</p> <p>2. 본 조합의 대의원은 정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주요 사항을 의제로 <u>발의</u>할 수 있다.</p> <p>(개정이유) “발의”를 삽입하여 본문 내용을 명확히 함.</p> <p>3. 본 조합의 대의원은 임원의 선출 및 임원 불신임 권고안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감사의 경우 해임 <u>할 수 있다</u>.</p> <p>(개정이유) 문구 오류를 수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p>
<p><b>제 5 장 , 지 부</b></p> <p><b>제 21 조 (지 부)</b></p> <p>본 조합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제4조 2항에 의하여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p> <p>1. 지부는 본 조합에서 지시된 업무만 행한다.</p> <p>2. 1개의 구 단위로 지부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개의 구 단위로 통합 지부를 구성 한다.</p>	<p><b>제 5 장 , 지 부</b></p> <p><b>제 21 조 (지 부)</b></p> <p>본 조합은 <u>대의원회</u>의 결의를 얻은 후 제4조 2항에 의하여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p> <p>(개정이유) 총회의 의미는 인천시 권고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대의원회로 정립함.</p> <p>1.</p> <p>2. 1개의 구 단위로 지부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u>2개 이상</u>의 구 단위로 통합 지부를 구성한다.</p> <p>(개정이유) 지부 구성에 있어 구 단위 통합을 2개에 한정한 듯한 문구를 수정하여 지부 구성을 명확하게 명문화함.</p>

현 행	개 정(안)
<p>제 22 조 (지부장)</p> <p>1. 지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지역 지부를 통괄한다.</p> <p>2. 지부장은 이사장이 대의원 당선자중에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제5조에 규정된 사업과 조합의 업무지시를 추진한다. 단, 지부장 해임시는 대의원으로 복귀한다.</p>	<p>제 22 조 (지부장)</p> <p>1.</p> <p>2. 지부장은 이사장이 대의원 당선자중에 지명하여 <b>대의원회</b>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제5조에 규정된 사업과 조합의 업무지시를 추진한다. 단, 지부장 해임시는 대의원으로 복귀한다.</p> <p>(개정이유) 총회의 의미는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대의원회로 정립함.</p>
<p>제 6 장 , 회 의 및 의 결</p>	<p>제 6 장 , 회 의 및 의 결</p>
<p>제 23 조 (회의의 소집)</p> <p>1. 본 조합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p> <p>2. 총회는 년4회 개최한다.(정기1회, 임시3회)</p> <p>3.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2 이상과 조합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p> <p>4. 대의원 및 조합원이 요구하는 임시총회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p> <p>5. 이사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한다.</p>	<p>제 23 조 (회의의 소집)</p> <p>1. 본 조합의 회의는 <b>조합원총회, 대의원회</b> 및 이사회로 한다.</p> <p>(개정이유) 회의의 구분을 조합원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로 명확하게 명문화 함.</p> <p>2.</p> <p>3. <b>임시 조합원총회 및 임시 대의원회</b>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2 이상과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p> <p>(개정이유) 임시 조합원총회와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문화 함.</p> <p>4. 대의원 <b>또는</b> 조합원이 요구하는 <b>조합원총회 및 대의원 임시회</b>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b>단, 대의원 또는 조합원 소집요구에 이사장이 소집 불응시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빠른 선임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b></p> <p>(개정이유) 이사장이 임시회 개최를 거부했을 때 감사가 임시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하여 민주성을 확보함.</p> <p>5.</p>

현 행	개 정(안)
<p><b>제 24 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는 조합원 및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li>   <li>2. 출석 인원중 개인사정으로 회의도중 퇴장 했을 경우에는 회의는 성립되며 의결권은 기권으로 한다.</li>   <li>3.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li>   <li>4. 조합 해산 및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li>   <li>5. 감사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1/2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li> </ol>	<p><b>제 24 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는 조합원 및 임원, <u>대의원</u>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li> <p>(개정이유) 회의의 종류인 대의원회가 누락되어 있어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함.</p> <li>2.</li> <li>3. <u>조합 해산 및 이사장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은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li> <p>(개정이유) 정관 제 28조와 중복되므로 정관 제28조(조합원 총회의결사항),제29조(대의원회 의결사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삭제함.</p> <li>4. <u>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li> <p>(개정이유) 이사장 해임안을 신설하고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 및 해임안에 대해 명확하게 함.</p> <p>(3항 삭제로 5항은 4항으로 변경 개정이유) 감사,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해임안 의결 정족수를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해소 함.</p> </ol>
<p><b>제 25 조 (의장 표결권 및 전무이사의 의결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li>   <li>2. 전무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li> </ol>	<p><b>제 25 조 (의장 표결권 및 전무이사의 의결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모든 회의의</u>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li> <p>(개정이유) 모든 회의의 의장의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제한하기 위함.</p> <li>2.</li> </ol>

현 행	개 정(안)
<b>제 26 조 (감사의 출석)</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조합의 감사는 제16조 4항의 직무와 필요시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li> <li>감사는 자체 감사시 전, 후반기(각각3일), 총회사 전, 후반기 감사보고2회, 이사회의시 분기별(4회) 출석일수를 가지며 2회를 연장하여 출석할 수 있다.</li> </ol>	<b>제 26 조 (감사의 출석)</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조합의 감사는 제16조 4항의 직무와 필요시 이사회의 <b>및 대의원회</b>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li> <li>감사는 자체 감사시 전, 후반기(각각 3일), <b>대의원회의</b> 전, 후반기 감사보고 2회, 이사회의시 분기별(4회) 출석일수를 가지며 2회를 연장하여 출석할 수 있다.</li> </ol> <p>(1,2항 개정이유) 감사보고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보완하여 명문화 함.</p>
<b>제 27 조 (긴급사항 처리)</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할 수 있다.</li> <li>전항의 경우에는 자체 없이 총회를 소집 또는 서면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li> </ol>	<b>제 27 조 (긴급사항 처리)</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대의원회</b>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b>대의원회</b>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할 수 있다.</li> </ol> <p>(개정이유) 총회의 의미를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회로 규정하여 명문화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항의 경우에는 자체 없이 <b>대의원회</b>를 소집 또는 서면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li> </ol> <p>(개정이유) 총회의 의미를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회로 규정하여 명문화 함.(서면 결의는 대의원회를 의미 함)</p>
<b>제 28 조 (총회의 의결사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 변경 및 조합의 주요사항.</li> <li>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 단, 임원 불신임 권고안은 서면 결의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의제로 할 수 없다.</li> <li>감사 해임안.</li> <li>예산안 및 수지결산 승인.</li> <li>사업계획 승인.</li> <li>제6조 및 제10조, 제11조, 제21조에 관한 사항.</li> <li>복지회 사업계획, 수지결산 및 규정 승인.</li> <li>기타 주요 사항.</li> </ol>	<b>제 28 조 (<u>조합원 총회</u>의 의결사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정관 제14조, 제28조 1항, 제39조의 정관변경</b></li> <li><b>이사장 선출 및 해임안</b></li> <li><b>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b></li> </ol>

현 행	개 정(안)
	<p>(개정이유) 조합창립이래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이 조합원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의결사항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되어 인천시에 민원 및 각종 소송이 난무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인천시의 정관개정 권고안에 따라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문화 함.</p> <p>9천여명의 조합원이 직접 조합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장소와 막대한 비용소모, 정확한 의사전달이 힘든 점,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인천시 권고안대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임.</p> <p><b>제29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제28조 제1항이외의 정관변경</li> <li>2. 이사장 이외의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불신임 권고안, 단, 이사장 이외의 임원에 대한 불신임 권고안은 서면 결의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의제로 할 수 없다.</li> <li>3. 감사 선출 및 해임안</li> <li>4. 예산안 및 수지결산 승인.</li> <li>5. 사업계획 승인</li> <li>6.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에 관한 사항.</li> <li>7. 조합 제 규정,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승인</li> <li>8. 복지회 사업계획, 수지결산 및 규정 승인</li> <li>9. 선거에 관한 규정 결의 제정</li> <li>10. 기타 주요 사항.</li> </ol> <p>(개정이유) 조합창립이래 현재까지 대의원회 결정으로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문화함.</p>

현 행	개 정(안)
<p><b>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b></p> <p>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li>   <li>2. 총회의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심의.</li>   <li>3.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li>   <li>4. 사업계획 수립.</li> <li>5. 예산안 편성 및 수지결산의 심의.</li> <li>6. 제11조의 조합원 제재에 관한 사항.</li> <li>7. 예산의 항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li> <li>8. 감사결과 보고 및 심의</li> <li>9. 기타 주요 사항.</li> </ol>	<p><b>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b></p> <p>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조합원총회, 대의원회</u>에서 위임된 사항.</li> <p>(개정이유)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이사회의 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문화 함.</p> <li>2. <u>조합원총회, 대의원회</u>의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심의.</li> <p>(개정이유)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이사회의 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문화 함. <li>3.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u>에 관한 심의</u></li> <p>(개정이유)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승인은 대의원회 의결사항 7항에 명시되어 있어 이사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심의를 명시하고자 함.   <li>4.</li> <li>5.</li> <li>6.</li> <li>7.</li> <li>8.</li> <li>9.</li> </p></p></ol>
<p><b>제 30 조 (의사록 작성)</b></p> <p>1. 총회 및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조합원 3명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의 회의록을 익월 이사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시 및 장소.</li> <li>② 회의 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의 성명.</li> <li>③ 부의 안건.</li> <li>④ 의사의 요령.</li> <li>⑤ 결의사항 및 찬반의 수.</li> <li>⑥ 기타 참고 사항.</li> </ol>	<p><b>제 31 조 (의사록 작성)</b></p> <p>1. <u>조합원총회 및 각종 회의</u>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조합원 3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의 회의록을 익월 이사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개정이유) 총회 및 각종 회의 내용을 의사록 작성하여 기록, 명확히 명문화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li> <li>②</li> <li>③</li> <li>④</li> <li>⑤</li> <li>⑥</li> </ol>

## 현 행

## 개 정(안)

### 7 장 , 자 산 및 회 계

#### 제 31 조 (자 산)

- 본 조합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본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및 비품.
  2. 가입비, 월례비 및 특별부과금.
  3. 조합원의 출자금.
  4.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자산.
  5. 본 조합의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6. 사용료 및 수수료.
  7. 기타 수입금.

### 제 7 장 , 자 산 및 회 계

#### 제 32 조 (자 산)

- 1.
2. 가입비,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

(개정이유) 월례비 문구를 조합비로 개정하여 일원화 함.

- 3.
- 4.
- 5.
- 6.
- 7.

#### 제 32 조 (자산의 관리)

본 조합의 자산관리는 이사장 및 전무이사의 책임으로 관리 운영한다. 단, 투자 목적자산 관리는 이사회의 결의.

#### 제 33 조 (사업연도)

본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 제 33 조 (자산의 관리)

#### 제 34 조 (사업연도)

#### 제 34 조 (정관, 총회의사록 및 조합원명부 비치)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35 조 (정관, 총회의사록 및 조합원명부 비치)

현 행	개 정(안)
<b>제 35 조 (사무감사)</b>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필하고, 조합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b>제 36 조 (사무감사)</b>
<b>제 36 조 (감사결과의 승인 및 보고)</b>  1.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하며 이사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한 결과 및 감사 현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예산 및 수지결산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감사가 보고한 지적사항 및 개정개선점 유발시 책임 소재 등 대체 방안을 총회 보고시 가결한다. 4. 승인된 수지결산서는 이사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제 37 조 (감사결과의 승인 및 보고)</b>  1. 2. 3. <b>대의원회는</b> 감사가 보고한 지적사항 및 <b>개정 개선점에 대하여 책임 소재 등 대체 방안을 가결한다.</b> (개정이유) 감사보고는 이사회 심의 및 대의원회의 결사항으로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수정함. 4.
<b>제 37 조 (규정의 제정)</b>  본 정관 외에 필요한 조합의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단, 복지회 사업계획 및 규정과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 승인 후 시행한다.	<b>제 38 조 (규정의 제정)</b>  본 정관 외에 필요한 조합의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되 <b>대의원회</b>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단, 복지회 사업계획 및 규정과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 승인 후 시행한다. (개정이유) 총회의 의미를 인천시 권고안에 따라 대의원회로 개정하여 명문화 함.
<b>제 8 장 , 해 산</b>	<b>제 8 장 , 해 산</b>
<b>제 38 조 (조합의 해산과 청산인)</b>  1. 조합의 해산은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다. 2. 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의 잔여 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b>제 39 조 (조합의 해산과 청산인)</b>  1. 조합의 해산은 주무관청의 명령 및 <b>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b> 에 의한다. (개정이유) 본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에 추가삽입 함. 2. 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의 잔여 자산은 <b>조합원</b>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다.

## 현 행

## 개 정(안)

### 제 9 장 , 부 칙

#### 제 39 조 (시 행 일)

1. 본 정관은 대의원 총회 후 14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
2. 본 정관은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40 조 (경과조치)

1. 본 조합 창설 이전의 인천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 및 기타 공직은 본 정관이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창립연도의 회계 마감은 1983년 8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창립연도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년도의 회계 마감일로 한다.

~

18. 본 정관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 9 장 , 부 칙

#### 제 40 조 (시 행 일)

1. 본 정관은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후 14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
- 2.

#### 제 41 조 (경과조치)

1.

2.

3.

~

18.

19. 본 정관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